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경기문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공동주택의 관리를 투명화하기 위함으로,

공동주택 관리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, 시장이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서울특별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, 그리고 「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」 제101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, 입주자,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본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사항 중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핵심적인 사안인 회계교육 등에 관한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시장이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

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, 교육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특히, ‘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’ 라는 「서울특별시

공동주택 관리조례」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고자, 지원의 기준으로 ‘회계감사결과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’를 두어 부분별한 지원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